

목 차

1. 평창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 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0
2.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53
3.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	57
4.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	60
5. 평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7
6. 1995년도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및결과	76

평창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번	안 호	3
--------	--------	---

제출년월일 : 1995. 7.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정부의 쓰레기감량화 추진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조·유통단계에서 부터 관련업계의 1회용품사용을 줄이도록 하고 이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식품접객업소(객석 및 객실면적: 66㎡이상 → 33㎡이상) 및 모든 집단급식소를 1회용품규제대상업소로 확대 [별표제3호가목, 나목, 나외2]
 - 적용대상1회용품:7종에서9종으로(이썬시계, 합성수지코팅된 1회용광고선전물 추가)
- 나. 숙박업소(객실: 30실이상 → 7실이상)의 1회용품규제대상 확대 [별표제3호라목]
 - 1회용면도기·칫솔등 5종 사용억제
- 다. 판매업소(매장면적 200㎡이상)추가 [별표3호마목]
 - 비닐봉투, 1회용 쇼핑백(PVC코팅만), 광고선전지 사용억제
- 라. 도시락제조업체를 새로이 추가 [별표3호사목]
 -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 도시락용기 사용억제
- 마.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 도소매업외 17개 업종에 대하여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광고선전물 제작·배포를 억제 [별표3호아목]

평창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과태료부과기준중 제2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바목 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식품류·잡화류·종합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감량화를 위한 연차별 감량화지침 준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000	2, 500	3, 000
바.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 완충재의 감량화지침에 따른 자체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000	2, 500	3, 000
사. 가전제품을 품목별로 연간 2만대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는자가 완충재 감량화 전년도 실적과 당해 연도계획 제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000	2, 500	3, 000

제3호가목중 "객석면적이" 을 "객실과객석면적이" 으로 하고, "1회용품사용자제" 를 "1회용품(이수시개는 제외한다)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 로 한다.

동호나목을 다음과같이하고, 나목의2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이수시개는 제외한다)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광고선전	1, 500	2, 500	3, 000
---	--------	--------	--------

물의 제작·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의2.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중 이쑤시개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500	1,000

동호라목중 "30실이상인 숙박업" 를 "7실이상인 숙박업소" 으로 한다.

동호마목, 바목 및 사목 을 다음과 같이 하며,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도매센타·쇼핑센타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영업장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광고선전물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0	2,500	3,000
바.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사.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락제조업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0	2,500	3,000
아.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백화점·대형점·도매센타·쇼핑센타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영업장은 제외한다), 가정용기기·기구 및	1,000	2,000	3,000

<p>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기타 금융업, 보험 및 인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음악 및 예술관련사업에서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광고선전물의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헌				행				개				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 (생 략) 2. (생 략) 가. ~ 라. (생 략) <u><신 설></u>				2,000	2,500	3,000	1. (헌행과 같음) 1. (헌행과 같음) 가. ~ 라. (헌행과 같음) 마. 식품류·잡화류·종합제품의 <u>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합성</u> <u>수지재질 포장재의 감량화를</u> <u>위한 인차별 감량화지침 준수</u> <u>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u> <u>아니한 때</u>				2,000	2,500	3,000		
마.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u>가 용적3만세제곱센티미터 이</u> <u>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u> <u>되는 합성수지재질 완충재의</u> <u>감량화를 위한 자체계획의 수</u> <u>립·시행에 대한 조치명령을</u>							마.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u>가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u> <u>는 합성수지재질 완충재의 감</u> <u>량화지침에 따른 자체계획의</u> <u>수립·시행에 대한 조치명령을</u> <u>이행하지 아니한 때</u>				(헌행과 같음)				

훈		행			기		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이행하지 아니할때									
바.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용적이 3만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 감량화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시. (생략)	2,000	2,500	3,000	사. 가전제품을 품목별로 연간 2만대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완충재 감량화 전년도 실적과 당해 연도계획 재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아. (헌행 사목과 같음)				(헌행과 같음)	
3. (생략)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66제곱미터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	1,000	2,000	3,000	1. (헌행과 같음)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66제곱미터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이썬시개는 제외)				(헌행과 같음)	

현				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p>병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중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160제곱미터이상인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1,500	2,500	3,000	<p>한다)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이썬시개는 제외한다)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현행과 같음)		

현				개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p>< 신 설 ></p> <p>나. (생 략)</p> <p>리.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중 객실이 30실이상이 숙박업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의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1) (생 략)</p> <p>(2) (생 략)</p>				<p>나.의2.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중 이쑤시개의 사용자재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다. (헌행과 같음)</p> <p>라.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중 객실이 7실이상이 숙박업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의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1) (헌행과 같음)</p> <p>(2) (헌행과 같음)</p>	300	500	1,000

현행				개정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마. 도·소매입진흥법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 및 쇼핑센터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0	2,500	3,000	마. 도·소매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영업장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광고선전물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현행과 같음)		
바. 도·소매입진흥법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 및 쇼핑센터에서 화장품류 및 세제류를 판매하는 자가 포장용기 재사용 제품을 진열·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용기의 재사용을	2,000	2,500	3,000	바. 도·소매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현행과 같음)		

현		행			기		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p>위한 회조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사. 도·소매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활용 제품이 교환·판매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신 설></p>	2,000	2,500	3,000	<p>사.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락제조업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아.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영업장은 제외한다), 가정용기기·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기타 금융업, 보험</p>	1,500	2,500	3,000	1,000	2,000	3,000

현행				개정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4. ~ 5. (생략)				<p>및 연금입, 증권거래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음악 및 예술관련사업에서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칠합(라미네이션)된 1회용광고선전물의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4. ~ 5.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발췌서

◦ 식품위생법 第21條(시설기준)

- ① 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운반업·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및 조리판매업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중위생법 第2條(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생접객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 가. 숙박업: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을 숙박시키는 영업
 - 나. 목욕장업: 목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목욕을 하게 하는 영업
 - 다. 삭제
 - 라. 이용업: 손님의 머리카락 및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 마. 미용업: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등에 손질을 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 바. 유기장업: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법에 의한 사행행위 또는 유사사행행위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손님의 유치 또는 광고등을 목적으로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도·소매업진흥법 第2條(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의 건물 또는 지하도에 설치된 다수의 점포시설에서 도·소매업자 및 이를 지원하는 용역업자가 계속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2. "정기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 2의2. "대형점"이라 함은 도·소매업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점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3. "대규모소매점"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의 건물에서 소매업자가 근대적인 시설과 운영체계를 갖추고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상품을 소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4. "도매센타"라 함은 일정구역안의 건물에서 도매업자가 근대적인 시설과 운영체계를 갖추고 상품을 도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 4의2. "집배송단지"라 함은 상품을 제조업자나 산자로부터 집하하여 보관·가공 또는 포장하고 이를 수요자에게 배송하며 관련유통정보를 종합·분석 및 처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구획되고 개발된 일단의 유통업무설비의 단지를 말한다.
5. "연쇄화사업"이라 함은 다수의 동일업종의 소매점포를 직영하거나 다수의 동일업종의 소매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상품을 공급하며 경영을 지도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상점가"라 함은 일정범위안의 가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도·소매업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근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 도·소매업진흥법 第14條(대규모소매점의 종류등)

대규모소매점의 종류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의안 번호	4
----------	---

제출년월일 : 1995. 7.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재원조달 및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3. 주요골자

- 가. 재정목적 :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 나. 구 성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5인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축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군수가 위촉(안제2조)
- 다. 기 능 :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안제3조)
- 라. 간 사 :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며 예산계장이 된다(안제7조)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 평창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란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15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을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축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개최)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계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안전배부)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실비보상)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서

●地方財政法^(1988.4.6)
(法律第4006號全文改正)

改正 1990.12.27 法律第4268號(政府組織法)
1991.12.31 法律第4466號

第16條의2 (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 ①地方財政計劃의 수립에 관한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각 地方自治團體에 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를 둔다.

②第1項의 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本條新設 91.12.31)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4
----------	---

발의년월일 : 1995년 8월 일

제안자 : 우강호의원 외 6인

□ 수정이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에 당연직 위원으로 문화공보실장을 추가하여
관광군으로 투자사업계획과 재원조달,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기여코자함임.

□ 수정주요골자

가. 위원회의 당연직으로 문화공보실장을 추가함(안제2호)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중다음과같이수정한다.

안제2조(제3항)중 "내무과장"앞에 "문화공보실장"을 삽입한다.

수정안대비표

원안	수정안
<p>제2조 (구성)</p> <p>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 ----- -----</p>	<p>제2조 (구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u>문화공보실</u> 장 ----- -----</p>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5
----------	---

제출년월일 : 1995. 7.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재 안 이 유

특별회계로 운영 관리하고있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를 동시에 폐지, 통합제정하여 체계적인관리 및 전체적인 자금규모 확대를 도모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 코자함.

2. 주 요 골 자

- 가. 유사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통합운영 (안 제1조)
- 나.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 (안 제3조)
- 다.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원대상가구 선정 및 선정기준 명정 (안 제5조)
- 라. 용자지원액 상향 조정 및 차별화 (안 제6조제1항)
- 마. 대부기간의 조정 및 저리이자 신설 (안 제6조제2항)
- 바. 자금지원 회수등 운영관리 체계 개편 (안 제4조)
- 사. 상환유예 근거규정 신설 (안 제10조)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잡수입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자금을 용자하는데 사용한다.

1. 주민소득지원 자금
2.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운용한다.

-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용자대상) ① 주민소득지원사업 (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용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②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용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증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1. 행사·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유지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5.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 용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중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1. 직전학년 성적 또는 입학성적이 제적학년 현원의 100분의 30 (실업계 고등학교는 100분의 50)이내인 고등학교 학생
2. 직전학년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학과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인 대학생 (전문대학 포함)

④ 제1항 및 제2항의 용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용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용자하지 아니한다.

제6조 (용자한도 및 이율등) ① 가구당 용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 안정자금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② 용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 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용자금에 대하여는 기금관리를 위탁한 금융기관 (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의 가계일반 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용자금은 2년거치 2년균분 상환 조건으로 한다.

제7조 (용자신청) ① 기금의 용자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 (이하 "용자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용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자신청서에는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이 연대보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용자금 대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인적담보 이외에 담보불건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용자대상자 선정·통보) ① 용자대상자 및 용자금액등은 평창군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㉔ 군수는 용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㉕ 군수는 용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용자신청자에게 용자결정 사실과 용자금 수령방법등을 통지한다.

제9조 (용자금 대출 및 상환) ① 용자금은 수탁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지출한다.

㉔ 용자금은 거치기간 만료후 연1회 균분 상환한다.

㉕ 용자금을 상환할 때에는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함께 징수한다.

㉖ 군수는 기금을 용자받은 자가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용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독촉하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용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용자금 상환이 어려울 때에는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㉔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㉕ 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㉖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중복용자의 금지) 기금을 용자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용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다시 용자할 수 없다.

제12조 (용자금의 회수) ① 군수는 기금을 용자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용자금 상환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상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용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4. 용자를 받은 자가 평창군 관할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② 제1항의 상환통지를 받은 상환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감독)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자금을 용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 실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연 1회 (12월31일) 기금운용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15조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으로 한다.

제16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2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평창군새마을소득특별사업운영관리조례 및 평창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항의 폐지조례에 의하여 이미 용자된 자금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④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항의 폐지조례에 의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서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기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평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
----------	---

발의년월일 : 1995년 7월 일

발의자 : 이경진의원외 6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95. 7. 1 대통령령 제14,703호) 공포됨에 따라 '95년 6월 새로이 선출된 평창군의회 의원에게 지방자치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 여비에 대한 지급기준을 정하고자하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종전에 지급되던 일비의 개념이 회의수당으로 변경되고 의정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함에 따라 조례 제명을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제명)
- 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로 월35만원으로 정함(안제2조)
- 다. 종전에는 회기중 의원에게 일비를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회의 참석자에 한해 회의수당을 지급함(안제3조)
- 라. 종전에 회기중 회의 참석을 위한 여비는 폐지하고 의정활동과 관련한 공무수행시에만 출장여비를 지급함.(안제4조)

평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 (이하"의원" 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①의원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로 월 35만원으로 한다.

③의정활동비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④임기 개시월과 임기 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회의수당) ①의원이 회기중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 개회중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당해 회의와 관련한 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회의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③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으로 한다.

제4조(여비) ①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
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여비의 지급 기준은 국내여비의 경우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
하고, 국외 여비는 별표2의 국외 여비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평창군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별표 1 】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4조 제2항 관련)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의 장 부 의 장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6,500	20,700	11,000
의 원	2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6,500	16,200	10,500

- 비고 : 1. 평창군 안에서의 여행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2. 자동차운임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주무관청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 요금을 지급한다.
3.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4. 수로여행시 운임의 정액은 해운항만청장의 인가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4조 제2항 관련)

(단위 : 미불화)

구 분	철 도 운 입	선 박 운 입	항 공 운 입	자동차 운 입	일 비 (1일당)	숙 박 비 (1야당)	식 비 (1일당)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의 장 부 의 장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에는 최상급의 철도 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 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 는 최상등급의 선박 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 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1 등 정액	실비액	가동급 25	가동급 130	가동급 107	140	170	195
					나동급 25	나동급 90	나동급 78			
의 원	공무상의 사유로 인 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 비액	공무상의 사유로 인 하여 침대요금을 필 요로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2 등 정액	실비액	가동급 20	가동급 114	가동급 81	130	155	180
					나동급 20	나동급 74	나동급 59			
					다동급 20	다동급 55	다동급 44			
					라동급 20	라동급 46	라동급 37			

비교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뉴욕, 런던, 파리, 마드리드, 동경, 홍콩, 모스크바

나. 나등급

(1) 아세아주 대양주 : 일본 파푸아뉴기니아, 싱가포르, 대만,
북경, 하노이

(2) 남.북아메리카주 : 워싱턴,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자메이카

(3) 유럽주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덴마크, 체코

(4) 중동, 아프리카 :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
리카, 카메룬,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니제르, 자이르,
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다. 다등급

(1) 아세아주, 대양주 : 인도, 터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부루나이, 필리핀, 타이,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2) 남.북아메리카주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바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르헨티나.

(3) 유럽주 : 아일랜드, 포르투갈,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4) 중동, 아프리카주 :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케냐,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시에라리온, 이디오피아, 부르키나파소,
모리시어스, 잠비아, 알제리

라. 라동급

(1) 아세아주, 대양주 : 미얀마, 스리랑카, 튀지, 네팔, 몽골

(2) 남.북아메리카주 : 구아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쿠아도르, 페루, 볼리비아,
우루구아이, 파라과아니, 수리남

(3) 유럽주 : 해당국가 없음

(4) 중동, 아프리카 : 레바논, 예멘, 모르코, 튀니지, 루안다,
말라위, 스와지랜드, 가나, 소말리아, 나미비아,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2. 1의 국가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 별표 4 】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제15조 관련)

구 분	의 정 활 동 비 지 급 범 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 조 활 동 비
시.도의회의원	월 500,000원 이내	월 1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350,000원 이내	

【 별표 4 】 지방의회의원 회의수당 지급 범위(제15조 관련)

구 분	회의수당 지급 범위
시.도 의회 의원	일 6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	일 50,000원 이내

□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시군및 자치구 의회는 1995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서

□ 지방자치법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다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의 비용은 시도의회 의원에 한한다.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 할때 지급하는 여비

3. 회기중에 지급하는 회의수당

②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 여비의지급기준)

①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4, 회의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5, 여비지급기준은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회의수당은 회기중 지방의회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1995년도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결과처리계획

1995년도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및 결과

평 창 군 의 회

현 지 확 인 계 획

주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현지확인을 통하여

- 민원 발생의 소지를 미연에 파악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 집행부의 적시성 있는 사업수행을 촉구하는등
-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코자 함.

□ 기본계획

- 기 간 : '95. 8. 5 ~ 8. 8
- 대상 사업 : '95 군정주요사업장 6개소
- 확 인 자 : 의장의 7인
- 확인반편성
 - 총 팔 : 의장
 - 반 원 : 부의장, 이경진, 유돈문, 이수현, 김두경, 우강호, 김종영 의원
 - 사무보조 : 의회사무과 직원 4명
- 확인 방법
 - 1일차 (8. 5) : 사업설명 청취 및 현지확인
 - 2일차 (8. 7) : 사업설명 청취 및 현지확인
 - 3일차 (8. 8) : 사업설명 청취 및 현지확인

□ 세부시행 계획

1. 일일 시간계획

구 분	시 간			활 동 내 용	비 고
	부 터	까 지	소요시간		
8. 5 (1일차)	-	09:00	-	- 등 원	소회의실
	09:00	11:00	120	- 현지확인(평창읍,유동리하천)	
	11:00	13:00	120	- 사업장별 현황 청취및 질의.답변	
	13:00	-	-	- 종 료	
8. 7 (2일차)		09:00	-	- 현장도착	봉평면출장소집결
	09:00	12:00	180	- 사업장 설명 청취 및 현장확인	
	12:00	13:30	90	- 중 식	
	13:30	16:30	180	- 사업장 설명 청취 및 현장확인	
	16:30	17:30	60	- 휴식 및 간담회	
	17:30	-	- 종 료		
8. 8 (3일차)		09:00	-	- 현장도착	결과집계
	09:00	12:00	180	- 사업장 설명 청취 및 현장확인	
	12:00	13:00	60	- 중 식	
	13:00	15:00	120	- 간 담 회	

2. 중점 현지활동 계획

- 사업별 운영 실태 및 주민여론 청취
- 사업장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분석
- 기타 행락지 관리 방안 모색

3. 기타사항

가. 현지활동 자료준비

- 대상사업 : 현지확인 대상 사업 목록 참조
- 자료작성 : 집행부에서 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작성 제공
- 자료제공일 : '95. 8. 5(토) 11:00 한

나. 현지활동 차량 확보

- 현지도착 및 귀가 : 개별 차량 이용
- 현 지 활 동 : 의회 및 의원 자가차량 이용

다. 사업장별 확인 예정(순서)

- 평창읍 유동리 하천변 행락객 실태
- 진조리 먹는 샘물(생수)제조 공장설립현황
- 휘닉스파크리조트개발 현장 오.폐수처리 시설설치및 운영실태
- 봉평 흥정계곡
- 오대산연수원오.폐수 처리 상황
- 진부 수항계곡

□ 집행기관 협조사항

1. 주요사업 추진상황 제출

- 대상 사업 : 현지확인대상사업목록에 의함
- 작성기준일 : '95. 8. 1 현재
- 제출 기한 : '95. 8. 5 11:00 한
- 규 격 : A4 복사용지 상철 (워드프로세서 작성 : 임의서식)
- 제출 부수 : 11부

2. 현지 안내 및 사업 현황 설명

- 현지에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 사업관계부서
- 타기관 발주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협조 (자료제공, 사업설명등)

— 현지확인 대상사업 목록 —

읍 면	사 업 명	비 고
<p>봉 평</p> <p>진 부</p> <p>공 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휘닉스파크리조트개발 현장 오.폐수처리 시설 설치 및 운영실태 ○ 진조리 먹는샘물(생수)제조 공장설립현황 ○ 오대산연수원 오.폐수처리상황 ○ 비지정관광지 운영 실태 (평창읍 유동리하천, 봉평면 흥정계곡, 진부면 수함계곡) 	

— '95 군 정 주 요 사 업 장 — 현 지 확 인 결 과

□ 확인개요

- 주 관 : 평창군의회
- 기 간 : 1995. 8. 4 ~ 8. 8 (5일간)
- 대상사업 : '95년도 군정주요사업장 6개소
- 확 인 반 : 1개반 12명 (의원8,사무보조4명)
 - . 총 괄 : 의장
 - . 반 원 : 부의장,이경진,유돈문,이수현,김두경,우강호,
김종영의원
 - . 사무보조: 의회사무과직원 4명
- 주요내용
 - .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있는 사업장을 중점 확인
 - 민원발생 소지를 미연에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
 - 집행부의 적시성 있는 사업 수행을 촉구
 - . 지역주민 여론청취 및 의정활동 정보 획득

□ 현지확인결과

1. 총괄

가. 집행부 업무처리면

대부분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점검을 통한 능동적인 업무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써 해당업체의 환경오염 행위를 초래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책들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나. 확인대상사업장 관련업체

집행기관의 정기 지도.점검시에만 오염방지를 위한 처리시설을 가동하거나 보완하는 등 대부분 사업장의 경우 임시 방편적인 처리로 일관하므로 실질적인 처리시설의 운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음.

다. 기타 사업장의 경우도

사업체에 대한 집행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며, 특히 비지정 관광지를 포함한 모든 행락지에 대하여는 집단화를 통한 집중관리로도모함이 타당하므로 전반적인 계획의 재검토를 통하여 실질적인 운용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 되었음.

2. 사업장별 확인결과

사업장명	확인요지 (개선사항중심)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조리 먹는샘물(생수)제조공장설립현황 ○ 휘닉스파크리조트건설현장 오.폐수처리시설및 운영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설립 진입로 시설의 완공후 군에 기부채납시 기업체 주진입로를 자치단체가 관리하게 되는 등 사후유지.관리상 문제가 예상되므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추진함이 타당할 것임. - 개발현장 인근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와 연계한 종합 오수처리시설로의 추진이 요구됨. - 기존침사지 시설 및 피복부분을 철저히 보완하고 우기에 대비한 토사유출방지시설을 보강하는 등 하류지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관계부서의 지도.점검 강화가 요망됨. - 기업과 군이 합동으로 탁류로 인한 환경오염사항을 수시조사.관리하여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특별대책이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대산연수원 오.폐수 처리 상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수정화처리시설에 대한 업체측의 가동소홀로 상수원 오염행위를 초래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하류지역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함. -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연수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요망됨. 	

사업장명	확인요지 (개선사항중심)	비고
<p>○ 비지정관광지 관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지정관광지 인접지역에 이용시설 집단화 및 편의시설 확충(화장실, 식수대, 쓰레기소각장, 물은박스 배치 등)이 요망됨. - 비지정관광지 이용에 대한 홍보활동이 미흡하여 이용객의 청결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매표소등에서 쓰레기봉투 및 홍보전단 배부로 동참의식 고취가 요구됨. - 하절기 비지정관광지 운영기간중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집중 지도.단속(아르바이트생,공무원 등을배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됨. - 비지정관광지의 하천.계곡에 대한 쓰레기 처리 특별대책 마련이 필요함. - 다중이용장소에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 및 관광안내소(아르바이트생,공무원 등배치)를 설치 지역소득 제고와 친절한 주민의식 알리기가 필요함. 	

사업장명	확인요지 (개선사항중심)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년부터 시행될 수 있는 하천.계곡에 대한 종합운영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노동리 청소년수련장 인근주변의 환경오염 극심으로 이의 개선과 운영관리에 대한 한계 (관리전환, 관리축구 등)를 명확히 하여 청결한 시설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바람. - 군 경계지점에 무단으로 설치한 타지역 잡상의 상행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 주민소득과 연계 추진할 필요가 있음. 	

1995년도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처리계획

평 창 군

현지확인결과처리계획

○ 확인기간 : '95. 8. 4 ~ 8. 8(5일간)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p>○ 진조리 먹는샘물 (생수)제조공장 설립현황</p>	<p>○ 공장설립 진입로 시설의 완공후 군에 기부채납시 기업체 주 진입로를 자치단체가 관리하게 되는등 사후유지·관리상 문제가 예상되므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추진함이 타당할 것임.</p>	<p>○ 본 도로는 농어촌도로 봉평리도 205호로서 해태에서 진입도로 정비허가 서류 제출시 검토를 면밀히 하여 허가코자 하며 시공에 대하여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p> <p>○ 공장 주진입로는 회사에서 직접 관리하며 농어촌 도로로 지정된 구간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함께 통과하므로 기부채납후 사후 유지 관리는 본군에서 함이 타당할것으로 판단됨.</p>
<p>○ 휘닉스파크 리조트 건설현장 오폐수 처리시설및 운영실태</p>	<p>○ 개발현장 인근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와 연계한 종합 오수 처리 시설로의 추진이 요구됨.</p>	<p>○ 오수 처리시설은 기초적인 하수관로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광범위한 지역의 오·폐수 처리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태로 향후 면은,무이리 지역의 취락지 조성시 하수관로 설치후</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p>○ 오대산 연수원 오·폐수 처리 상황등</p>	<p>○ 기존 침사지 시설 및 피복 부분을 철저히 보완하고 우기에 대비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보강하는등 하류 지역 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 한 관계부서의 지도· 점검 강화가 요망됨.</p> <p>○ 기업과 군이 합동으로 탁류로 인한 환경오염 사항을 수시 조사 관리 하여 사전에 피해를 방 지 할수 있는 특별대책 이 요구됨.</p> <p>○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업체측의 가동소홀로 상수원 오염행위를 초 래 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하</p>	<p>통합 오수처리시설 설치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 을 (주)보광과 협의 하겠음</p> <p>○ 환경영향평가 결과 저류조 8개소를(96,320m³) 설치 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10 개소(72,358m³)설치로 부족 용적 24,962m³에 대하여는 추가 설치토록 하고 피복 부분에 대하여는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 수질 오염을 방지해 나아가겠음.</p> <p>○ 환경영향평가 및 오염 피해 에 따른 가장 기초적인 평 창강 생태계 조사를 (주) 보광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생태계 조사용역을 협의 추진할 계획임.</p> <p>○ 오수정화시설 시설·설계 업체와의 위탁관리 체결로 현재 정상가동중이며, 향후 수시 지도점검및 방류 수 수질검사 강화로 수질</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p>○ 비지정 관광지 관리등</p>	<p>류지역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함.</p> <p>○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연수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요망됨.</p> <p>○ 비지정관광지 인접지역에 이용시설 집단화및 편의시설확충(화장실, 식수대,쓰레기소각장, 물은박스배치등)이 요망됨.</p> <p>○ 비지정관광지 이용에 대한 홍보 활동이 미흡하여 이용객의 청결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매표소 등에서 쓰레기 봉투 및 홍보전단 배부로 동참의식 고취가 요구됨.</p>	<p>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음.</p> <p>○ 오대산 청소년 수련마을에 관내 학생들 이용시 저렴한 비용으로 수시 이용할수 있도록 협조 요청 하겠음.</p> <p>○ 비지정관광지 이용실태 전반에 대하여 종합분석후 간이화장실,가로등설치, 안내판정비,물은박스 설치 등 편의시설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아갈 계획임.</p> <p>○ 금년부터 입장객에 대하여 쓰레기 봉투를 배부 자율수거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쓰레기봉투 확대 배부, 제도전단 배부 및 자율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수시 교육을 실시 내방객들의 의식 계도에 힘쓰겠음.</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p>○ 하절기 비지정관광지 운영 기간중 쓰레기 불법 투기등을 집중 지도 단속(아르바이트생, 공무원등을 배치)하여 환경 오염을 방지할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됨</p> <p>○ 비지정 관광지의 하천 계곡에 대한 쓰레기 처리 특별 대책 마련이 필요함.</p>	<p>○ '96부터 비지정관광지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하계 아르바이트생을 고정 배치토록 하고 비지정관광지별 실과 전담제를 실시 쓰레기투기 등 환경 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토록 할 계획임.</p> <p>○ 다중 이용장소에 전단 배부대를 설치 계도용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제작 배부하고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집용기, 로온박스등을 취약지에 확대 배치하여 1일 1회 정기 수거토록 할 계획임. 또한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및 지역별 자연환경 명예 감시원을 활용 행락철에 집중적인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군. 읍면 및 유관기관 단체로 수계별 책임 정화구역을 지정 자연정화활동을 년중 지속 전개토록 할 계획임.</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p>○ 다중 이용장소에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 및 관광안내소(아르바이트생 공무원등 배치)를 설치 지역 소득 제고와 친절한 주민의식 알리기가 필요함.</p> <p>○ '96년 부터 시행될수 있는 하천·계곡에 대한 종합운영관리 대책을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음.</p>	<p>○ 현재 여름철 관광 성수기에 도로변에 천막을 설치하여 부녀회 또는 영농회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판매장이 10여곳이 있으며 일부 비지정 관광지에도 개별 노점 형태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나 운영이 미미한 실정인바, 향후 마을 영농회나 부녀회를 통하여 조립식,천막등 판매장을 설치 농산물 판매의 효과를 높일수 있도록 하고, '96년 관광 안내대를 15개소에 설치 관광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임.</p> <p>○ 수계별로 지리적여건,이용객 및 오염실태, 주민의견 등 종합적인 검토후 비지정관광지 확대지정등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겠음.</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p>○ 노동리 청소년 수련장 인근 주변의 환경오염 극심으로 이의 개선과 운영 관리에 대한 한계(관리전환, 관리촉구등)를 명확히 하여 청결한 시설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 바람.</p> <p>○ 군 경계 지점에 무단으로 설치한 타지역 잡상인의 상 행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 주민 소득과 연계 추진할 필요가 있음.</p>	<p>○ 이승복 청소년 야영장의 운영 관리에 대하여는 '95.3월 시군 사회진흥과장 회의시 운영관리의 한계를 명확히 해 줄것을 도에 건의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차후 야영장 시설 보강공사 종료후에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강원도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임.</p> <p>○ 잡상인의 무단 상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인접군(홍천군)과 협조 교통량, 이용객등을 조사하여 관광안내소를 겸한 농산물 직판장 설치등 주민 소득 증대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음.</p>